

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
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
핵심부품 및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웨어러블 분야의
특화된 거점이 될 『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사업화지원센터』가
2018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,
- 나. 사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에
반영하고자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장비구축과
시설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지역 중소기업의 전문적 지원기반을
마련하고 웨어러블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
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대 표 : 남유진

- 소 재 지 :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
- 출연예정액 : 금800,000천원(도비240,000, 시비 560,000)

※ 사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3차년도 장비구축 및 운영비

나. 주요 사업

- (1) 사 업 명 :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
- (2) 사업기간 : 2016. 10 ~ 2020. 12.(5년)
- (3) 위 치 : 구미대로 350-27(금오테크노밸리 內)
- (4) 총사업비 : 1,278.8억원(국비 819.8 지방비 92.79 민자 366.21)
 - ※ 센터건립(리모델링) 및 장비구축 : 168억(센터 46, 장비구축 100, 운영비 22)
- (5) 사업주체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, 경상북도, 구미시
- (6) 전담/주관 :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(ИTP) / 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7) 사업내용
 - 기반구축사업 : 사업화 지원센터 리모델링 구축(4층, 4,167m²)
 - 연구개발(국가직접수행) : 소재부품 및 플랫폼 기술 개발
 - 중소기업 특화형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·상용화를 위한 성능평가/실증화 장비(13종) 구축 및 기술지원
 - 웨어러블 산업 핵심분야(디바이스, 서비스) 앵커기업 유치
 - 전문기업 발굴 후 패키지사업(디바이스-망-서비스)형 시장 진입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

(8) 연도별 소요예산

구분	재원	계	'16년	'17년	'18년	19년	'20년
총계	총 계	1,278.8	80.58	263.43	292.60	315.40	326.79
	국 비	819.80	40.00	153.80	195.60	210.00	220.40
	도 비	32.74	13.75	4.95	2.40	5.52	6.12
	시 비	60.05	6.83	20.47	5.60	12.88	14.27
	민 자	366.21	20.00	84.21	89.00	87.00	86.00
연구개발	소 계	1110.4	60.00	237.80	268.60	264.00	280.40
	국 비	744.80	40.00	153.80	179.60	177.00	194.40
	민 자	366.00	20.00	84.00	89.00	87.00	86.00
지원센터	소 계	46.00	20.58	25.42	-	-	-
	국 비	-	-	-	-	-	-
	도 비	18.70	13.75	4.95	-	-	-
	시 비	27.30	6.83	20.47	-	-	-
장비구축	소 계	100.0	-	-	21.4	44.00	34.60
	국 비	75.0	-	-	16.00	33.00	26.00
	도 비	7.5	-	-	1.62	3.30	2.58
	시 비	17.5	-	-	3.78	7.70	6.02
운영비	소 계	22	-	0.21	2.60	7.40	11.79
	도 비	6.54	-	-	0.78	2.22	3.54
	시 비	15.25	-	-	1.82	5.18	8.25
	민 자	0.21	-	0.21	-	-	-

(9) 추진현황

- '14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(기재부) : '14. 4. 11.
-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 (B/C 1.02) : '15. 11. 23.
-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 : '16. 3. 2.
- 사업화지원센터 구축(리모델링) 설계용역 실시 : '16. 9월
- 사업화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착공 : '17. 8월

(10) 향후계획

- 사업화지원센터 준공 : '18. 2월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대통령의 지역공약(경북-① IT융복합신산업벨트 조성) 사업
- (2)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개발의 상용화·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통합 지원할 수 있는 「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화 지원센터」를 구축하여 웨어러블 성과확산의 거점기관으로 활용하고 지역 강소기업의 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
- (3) 웨어러블 실증환경 및 구축장비를 이용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전문기관과 기업들의 산·학·연 간 기술정보 공유 및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(2)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- (3)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- (4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(5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□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

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

(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.

이하 "산업기술개발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, 부품·소재 및 장비·설비(플랜트를 포함한다) 기술
2.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
3.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,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
4.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·시스템 기술
5. 에너지 절약 및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·자원기술
6.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2조 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
7. 디자인·브랜드·표준 관련 기술, 유통·전자거래 및 마케팅·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
8.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
9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·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
10. 삭제 <2013.3.23.>
11.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
12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
13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(이하 "

주관연구기관"이라 한다)

2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

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(이하 "참여기관"이라 한다)

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

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

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

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·관리 및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기획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
2.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(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
2. 산업기술 연구장비·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
3. 연구장비·시설·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(集積化) 촉진
4.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·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·관리 및 활용의 촉진
5. 산업기술의 표준화, 디자인·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

6.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·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
7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(이하 "주관기관"이라 한다)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,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-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(제1항은 제외한다)·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관연구기관"은 "주관기관"으로, "산업기술개발사업"은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 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관리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」

제3조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
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		투자통상과
입 안 자	과 장	이 창 형
	담 당	권 기 열
	담 당 자	김 익 기 (480-6142)